교회법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 INSTITUTE OF CHURCH LAW

통권 제21호

학술논문 /월간

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11주년

1912 - 2023

월간
교회법

발행인 : 소재열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등 록 : 김포,라00029
인쇄인 : 한명훈
발행일 : 2023. 2. 1.
주 소 :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아침오피스텔 1208호
전 화 : (03) 984-9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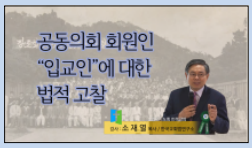

□ 공동의회 회원인
'입교인'에 대한 고찰 _ 3
- 공동의회 의결권자 -
□ 작은교회 교회당, 부동산 위기 _ 12
□ 교회 재산, 처분권 비상 _ 13
□ 목사면직 처분은
교회 담임목시직 해직 _ 15
□ 무임집사
제직회 회원이 되는 절차 _ 18
□ 임시 당회장 불법 파송,
지교회 대표권 없다 _ 20
□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_ 23
□ 교회 행정직원 정년 규정해야 _ 25
□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_ 26

교회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조직과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정치를 필요로 한다. 교회의 기본 통치권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때 사람과 사람들의 기관을 활용한다.

교회는 말씀선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신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일반 시민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교회는 여러 정치 형태로 감독정치, 대의정치, 회중정치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고대교회는 감독정치를 통해, 로마 가톨릭교회와 영국교회는 감독이 곧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막강한 권세를 누려왔다. 종교개혁교회 중에 루터교회와 감리교회는 감독제도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대의정치 제도를 도입한 장로교회는 감독정치는 종교개혁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한다. 교인의 대표자와 교회의 대표자를 세워 그들로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제도이다. 대의정치는 교회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선택한 직원으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선택된 교회의 직원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하면 안 된다. 그 남용의 현장이 오늘날 지교회의 분쟁이다. 성경적 근거 위에서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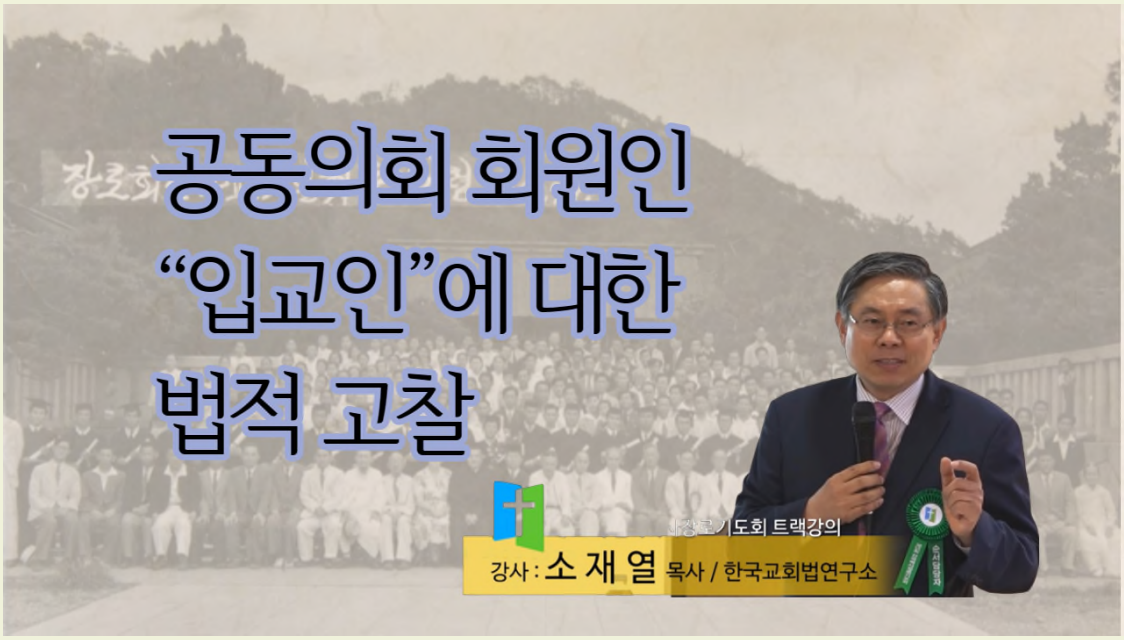

1. 서론

본 논문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1] 회원인 '입교인'에 대한 문제를 교회법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 최고 의결기관이다. 공동의회 회원은 최고 의결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교회 총유물권자이다. 구성원인 회원은 공동의회 결의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줌으로 매우 중요하다. 공동의회 회원은 교회 의결권자이며, 그 의결권에 의한 총유 재산과 교회적 문제를 결정한다.

공동의회의 전권사항으로 정관 제정과 변경, 교단탈퇴, 교회 합병과 분립, 해산 등은 교회 의결권인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의회가 집행기관인 당회나 제직회에 위임할 수 없다. 위임한다고 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여기서 '공동의회 전권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산권 행사 등 기타 문제들은 공동의회가 집행기관이나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별히 공동의회 전권사항인 정관변경으로 재산처분 등은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당회는 위임받은 재산권 등의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위임에 의한 처리권 행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공동의회는 회원이 중요하다. 어떤 절차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을 확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는 공동의회

1) 공동의회라는 용어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최초의 헌법에서 '공동처리회'라고 했다. 이 공동의회 의회는 집행기관인 당회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헌법에 대한 제1차 개정인 1929년 판에서는 '공동처리회'를 '공동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회에 예속기관이 아닌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독립시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 헌법에서 공동처리회가 당회에 예속되었으므로 당회의 소집결의가 있어야 소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헌법 개정에서 당회 소속에서 별도의 독립된 최고 의결기관으로 하였지만, 여전히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소집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교회 최고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인 당회에 의해 소집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적법 절차를 논할 때 중요한 법리적 문제가 된다.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데 중요한 요건이므로 이 요건은 반드시 의결권자(회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본 논문은 보편적으로 장로교단 헌법에서 공동의회 회원으로 "무흠 입교인"이라는 용어를 해석하고 살피는 데 있다. 실무적으로 마치 공동의회는 세례를 받은 자는 당연히 공동의회 회원이라고 주장, 판단하여 이를 의결정족수로 삼는 모순을 해결하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2. 장로교회 헌법의 공동의회 회원 규정

조선예수교장로회 초기 헌법이 1922년 판 헌법이다. 이 헌법이 한국의 모든 장로교단과 장로교회의 원형적인 헌법이다.

1) 헌법에서 언급한 '입교인' 개념 정의

현행 교단헌법에 언급된 입교인이란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입교식을 거친 입교인을 포함할 뿐 교회의 입교인 자체의 동일 개념은 아니다. 입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 세례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례교인은 곧 입교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의회 회원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2)]

공동의회 회원은 '입교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입교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입교인은 장로회 신조 제11항에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入敎)하여 서로 교제하며"[3)],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4)]라고 하였을 때 '입교인'이 있다. 이 입교인은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라고 할 때 '입교인'[5)]과 구분된다.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6)] 이 '입교인'을 세례교인과 구분하고 있다.[7)] 세례교인어야 입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세례교인은 곧 동일 개념의 입교인이라 하지 않는다.

헌법에 치리 장로의 자격으로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라고 할 때 '입교인'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입교인인 세례교인이거나 유아세례를 받아 입교식을 통해 성년이 된 입교인을 포함한 용어 개념이다. 집사 규정에는 '입교인'이 빠지고 "무흠한 남교인으로"라고 했다.

입교식에 의해 입교한 자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을 당회가 본 교회 입교인으로 입회 결정할 경우, 입교인이라 한다. 교단헌법에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이 아니라 '공동의회 회원은 입교인'이라는 의미는 세례교인과 입교식을 통해 입교한자 모두를 당회가 입교인으로 입회 결정할 때 이들을 공동의회 회원이란 의미이다.

2) 입교인의 첫 번째 요건 : 성년으로서 입교식을 거행한 자

첫 번째 입교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입교인은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입교예식을 통하여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21장 제1조 1항.

3) 장로회 12 신조 제11항.
4) 장로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7조 1항.
5) 장로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6조 3항.
6) 장로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3조 3항.
7) 장로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6조 2항.

'입교인'이 된다. 이 '입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인 '입교인'과는 동일 개념이 아니다. 유아세례를 통한 입교자(인)는 공동의회 회원에 포함되지만, 그 입교자가 입교인이라는 동일 개념의 의미가 아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은 후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식을 거행한다.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6조 성례(聖禮)
만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유아 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8)]

헌법, 예배모범에 의하면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다. 예배모범 제11장 제3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3. 입교
(1) 교회 교우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 아래 있고 글을 가르치며 요리문답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독습하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요, 성년(成年)이 된 후에는 힘써 권고하여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우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 참여함을 청원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와 특권임을 기억하게 한다.
(2)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3) 세례 받지 아니한 성인이 입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충성함에 대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고 교회 공중 앞에서 자 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한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이다.
(4)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이 옳으나 그 사 람은 출생 때부터 교회의 특별한 관계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할 것이다.[9)]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은 것은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받지만 입교식은 본인의 신앙고백으로 받는데 이를 '성년이 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년이 된 입교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5) 입교 문답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성년이 되어 공식 선언하는 날에 당회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 앞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後嗣)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중에 ○○○ 씨가 지금 믿음의 권속 중에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하여 허락하였습니다」
②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거든 목사가 설명하기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 씨를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은 일에 대한 저희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성도와 동반(同班)되는 것을

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헌법적 규칙 제6조 제2,3항.

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예배모범 제11장 제3항 (1)-(4)

환영하며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할 것이다.[10)]

정리하면 공동의회 회원인 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년에 해당한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반 14세가 되어 입교식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받고 입교식은 본인의 신앙고백으로 받는다. 입교식은 당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즉 당회 결정 없이 입교식을 행할 수 없다. 세례는 헌번만 받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았기에 입교식 때에는 세례를 다시 받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재세례파가 아니다.

당회의 결의로 입교 문답에 통과되고 입교식 통해 하나님과 교회 회중들 앞에서 선서한 후 담임목사의 공포로 입교인이 되어 세례 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으로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공동의회 회원으로 규정한 교단헌법의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입교인”은 곧 “입교식을 통해 공포된 입교자(인)”를 포함한다. 다만 입교자(인)는 공동의회 회원인 입교인의 첫 번째 자격요건으로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3) 입교인의 두 번째 요건 : 학습을 거쳐 세례를 받은 자

공동의회 회원 자격인 입교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아세례를 거쳐 입교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모두가 유아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유아세례를 받지 않아도 세례를 받아 입교인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곧 학습 과정을 통해 세례를 받으므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는 당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헌법, 헌법적 규칙
제5조 학습(學習)
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6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11)]

헌법인 헌법적 규칙에 규정 외에 예배모범에도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이 있다.

헌법, 예배모범 제11장 4항
4. 학습
(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
(3)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식 시간에 학습교인이 된 것을 공포한다. 「○○○ 등 이상 ○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학습교 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원입교인이 만 14세 이상인 자 중에서 6개월 동안 성실히 교회 생활을 하였을 때 당회 결의로 학습교인으로 확정하고 학습교인 후 6개월 후 세례 문답을 통하여 세례교인이 된다. 세례교인으로 입교인이 될 때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이는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두 번째 요건의 입교인이다. 두 번째 요건 역시 당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예배모범 제11장 제3항 (4) (5)

1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헌법적 규칙, 제5조, 제6조.

4) 입교인의 세 번째 요건 :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등록 교인

본교회에서 입교식과 세례를 통해 입교인이 되어 공동의회 회원이 되지만 마지막으로 타 교회에서 이명해 와 등록한 교인이 있는데 이들 역시 공동의회 회원이다. 이때 공동의회는 당회가 심사하여 입교식을 행한 입교인 인가? 또한 세례를 받은 입교인가를 확인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교회 정관에 따라 등록 교인, 즉 입교인으로 확정한다. 단순히 교회 예배 때 등록 카드를 작성하였다고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입회 결정이 있어야 입교인으로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여기 당회의 입회 결정은 곧 입교인 결정이다.

5) 소 결론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회가 입교인으로 승인해야 입교인이 되어 교회 입교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때 이들을 공동의회 회원이라 할 수 있다.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교인이 등록하였을지라도 이는 등록신청자일 뿐, 권리관계를 위한 절차에 따라 입교인으로 확정하는 당회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된다.

따라서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이를 승인할 때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타 교회 교인이 분쟁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하여 법적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예배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에 불과하다. 반드시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에 의한 당회의 입교인으로 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법원이 분쟁 교회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여 쟁송을 판단할 때 단순히 세례를 받은 자는 자동으로 공동의회 회원으로 하여 의결권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때로는 정관에 “세례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이다”라고 특정하였을 때는 문언적으로 유아세례 교인에 의한 입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오직 세례교인만이 공동의회 회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례교인(입교인)’이라 하든지, ‘입교인(세례교인)’이라고 해야 한다. 아니면 헌법대로 ‘입교인’이라 해야 한다.

문제는 세례교인임을 확인하여 교인 의결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입회 퇴회’ 결정에 따라 세례교인(입교인)임을 확인하여 공동의회 회원명부에 등재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회록과 당회 결의로 확정한 공동의회 회원명부에 대한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야 있어야만 교회법에서 이들을 공동의회 의결권자라 한다.

3. 총 의결권자 확정과 교인명부

교회가 은혜롭게 운영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될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노출되어 다툼이 발생한다. 공동의회의 각 결의와 관련하여 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당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할 직무가 있다. 이 이야기는 당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회의 총수를 확정하지 아니할 경우, 교회법으로 확정할 방법이 없다.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정하는 전제가 된 당회 결의의 유·무효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통합 측 헌법에는 당회의 결의로 교단헌법에 따라 교인의 회원권 정지나 실종으로 처분되는 그

교인에 대하여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효력은 의결권자 총수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당회가 실종 교인 및 회원권 정지교인 결의를 하였음에도 공동의회 당시까지 회원권 정지나 실종으로 처분되는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실종 교인 및 회원권 정지교인를 의결권 총수에서 삭제하면 이는 무효가 된다.

실종 교인은 교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수 없는 자임이 명백한 자로서 실종 교인을 교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본인도 더 이상 교인으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그 추정적 의사에 따라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인으로서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 내지 출교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출교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실종 교인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 결국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가운데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여 총 의결권자의 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여기서 쟁점은 교단 헌법의 적법 절차에 따라 교인 지위를 박탈하였느냐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합동 측 교단 헌법에는 무고히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일정한 의결권이 제한될 뿐 교인의 지위가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총 의결권자에 포함해야 한다. 의결권자인 재적 교인임에도 공동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정지된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무고히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교인의 지위가 박탈된다"라는 규정을 둔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불출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총 의결권자의 수에서 삭제하면 된다. 무고히 6개월 이상 불출석하거나 다른 교회 이적하는 등의 사유로 재적 교인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소송 분쟁에서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총 의결권자 확정이 중요하다.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의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송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정관 제정에 관하여는 이를 규율할 자치규범이 있다면 그 자치규범이 적용되어야 하고, 자치규범이 없다면 민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12]

> 교단의 헌법은 피고의 자치규범이 없을 때 피고의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13]

법원은 이 부분 관련 헌법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교인의 자격에 관하여 피고의 자치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위규범으로서 교단 헌법 중 정치편 제21장(의회) 제1조(공동의회)는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교단 헌법 중 헌법적 규칙 제3조 제2항은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위 헌법적 규칙 제3조 제2항을 들어 '입교한 지 6개월 이상 된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1차 기준으로 삼아 의결권 있는 교인을 한정하였으나 위 정치편 제21장 제1조가 공동의회의 회원 자격에 관하여 '무흠 입교인'이라고 정할 뿐이어서 선거권을 그와 같이 제한하는 해석은 제1조와 명백

1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1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등 참조.

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헌법적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의도하는 '선거권의 중지'는 대상자가 이미 선거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양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교회에 입교하면 일단 공동의회의 회원으로서 선거권을 가지게 되나, 입교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교인들 중 공동의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치 아니하는 자는 선거권이 중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의결권 있는 교인의 수는 피고에 입교한 전체 교인들에서 '입교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교인들 중 공동의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동안 교회 예배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교인'만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4]

권한을 가진 당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총 의결권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상황일 경우가 많다.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총 의결권자(공동의회 회원)를 확정하였다면 명부를 확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명부는 공동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회원권 유무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간혹 공동의회 회원 명단에 상당수의 기존 교인들이 누락되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다수의 사람이 교인으로 명단에 올라있기도 한다. 특히 공동의회 회원명단 등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위조)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의회 회원 명단, 즉 총 의결권자 확정에 대한 문제에 적차적 위법성이 있을 경우,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정되어야 한다.

4. 공동의회 의결정족수

1) 공동의회 의사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하여

공동의회는 총 의결권자(회원)가 확정된 후에 공동의회의 의결 방법인 의결정족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사(의결) 정족수는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를 말한다.

합동 측 교단 헌법이 나 대부분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의회 개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회 정관은 부동산의 처분이나 정관변경, 교단탈퇴 등에 관한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란 구성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에서, 의결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를 말한다. 이러한 중대한 결의를 할 때 정관에 "공동의회에서 2/3의 찬성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 2/3의 찬성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모 교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법원에서 무효가 된 사례에서 정관에 정관변경은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32077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있었다. 이 규정에서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출석회원이 아닌 총 의결권자(총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석하여 출석회원 3분의 이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참석한 회원으로 하여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혹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등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때로는 “투표자 수 과반수”, 혹은 “투표자 수 3분의 2 이상” 등으로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인 과반수”, 혹은 “교인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경우, 이때는 출석회원이 기준이 아닌 전 재적 교인이 기준이 되어 버린다. 지금이라도 해당 교회 정관을 확인해야 한다.

2) 공동의회 참석자가 의결권자인지 아닌지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상 이유로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의 공동의회가 개최될 당시 피고는 교인등록명부를 비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인들의 참석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하였고, 피고의 공동의회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정관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으며,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투표용지에 의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동의회를 개최할 때 반드시 교인등록 명부를 비치하여 교인들의 참석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결의가 투표용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형식으로 판단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였다[15] 이에 불복하여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항소하였으나 1심의 판단이 인정되었다.[16]

그러나 법원은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총유권자인 의결권자가 확정되어야 하며, 공동의회에서 그 의결권자가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물론 앞서 살펴본 대로 “개최할 때 반드시 교인등록명부를 비치하여 교인들의 참석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모든 관련 소송에서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뒤로 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달리 판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 – 공동의회 의결권자 확정과 비치 의무

공동의회는 모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때 무효가 된다. 무효인 공동의회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공동의회를 개최될 당시 소속된 교인을 몇 명으로 하여 공동의회 결의를 해야 유효한 결의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된다. 담임목사가 임의로 작성한 교인명부로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교인임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된다.

장로회 각 교단 헌법은 ‘입교인 명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다. 의결권에 대한 논쟁이 있기 전에 사전에 확정된 교인(입교인) 명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교인명부가 작성되어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32720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038919 판결.

공동의회에서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대신할 때 위임장에 위임자들의 일부 인적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위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6개월 이상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권리가 중지된다는 교단 헌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결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정기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임시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안건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 공동의회를 소집권자인 담임목사가 있으면 담임목사가, 임시 당회장이면 임시 당회장이 소집권자가 된다. 담임목사가 노회로부터 면직이나 정직을 당하면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 안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하여야 한다, 안건 내용이 정확한 문장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정관변경 건', '직원 피택 건', '재정결산권', '교단 탈퇴건', '부동산 처분건', '부동산 취득건', '담임목사 청빙건', '예산 결산 편성건' 등이다.

-. 정기 공동의회, 임시 공동의회 공히 당회 결의가 필요하다. 당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당회 결의는 안건, 및 일시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 담임목사 자신에 대한 문제, 예컨대 위임목사 청빙 등은 당회 결의로 담임목사가 노회 내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초청하여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담임목사는 1주일 전에 공지한다는 교단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1주간을 선기하여' 아니라 '1주간 전'이라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1주간 전이라 주일에 공지하여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하루가 모자라 하자가 된다. 그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간혹 교회 정관에 6일 전에 공지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주일에 공지하여 다음 주일에 소집할 수 있다.

-. 당회에서 결의한 정확한 안건을 공지하되 정기 공동의회, 임시 공동의회 공히 안건을 공지해야 한다. 주보에 공지할 경우, 공지했다는 사실이 주보로 입증되는 그 외에는 입증이 힘들 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공지할 때는 공동의회 회원인 의결권자가 확장되어 있어야 한다. 확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때라도 확정해야 한다. 확정 명단을 공동의회 회원 명단(입교인 명단)을 비치해야 한다.

-. 공동의회 개회 때 현장에 출석한 교인인 입교인 명부(교인명부)에 등재한 의결권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정해진 시간에 공동의회를 개회하고 서기로 안건을 낭독케 하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의장은 안건 상정을 공포해야 한다.

-. 결의 방법이 출석회원, 재적 회원 등의 다수결인가,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결의 후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가 서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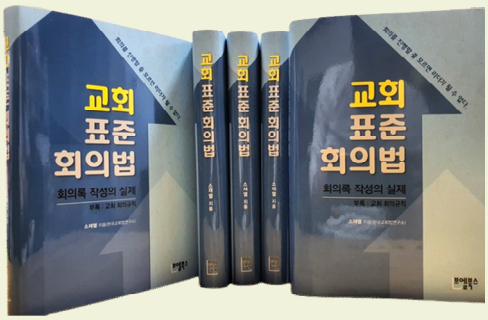

소재열 목사 지음, 브엘북스 정가 1,500원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환경이 변하고 있다. 교인 수와 헌금이 감소하고 있다. 출석했던 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넘게 출석하지 않는다. 그들을 계속 교회 교인으로 봐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즉 교회 의결권자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대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성장하여 교회 재산이 확충되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할 때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자신의 은퇴 비용을 부동산 담보로 융자를 받아 해결하여 교회를 떠났다. 2대 담임목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발생했다. 이제 3대 목사가 부임할 당시 교인은 15명 선이었다. 교회 부동산 담보에 따른 채무로 매월 3~4백만 원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 매월 이자 상환도 버겁다.

매월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할 때 은행권은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에 들어갈 것이다. 교회는 대책이 없다. 방법은 교회당 등 부동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를 상환하고 난 나머지 돈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도 폭락하고 있다. 진퇴양난이다. 이때 교회당 및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전체 교인 15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쉽게 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이때 의결정족수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에서 일부 교회 담임목사가 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자 이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당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교회를 이전하여 처분한 돈을 사익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지교회 재산은 그 교회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로서 제3자인 노회와 총회는 개입할 수 없다. 기껏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재산을 처분한 담임목사직을 징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징계를 각오하고 재산 처분한 목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각종 헌법은 교회 재산이 된다.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비록 교회의 대표자에 의한 교회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17]

교회 재산은 교인의 총유(지분권 없는 공동소유 재산)에 속한다. 따라서 재산처분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 그 정관에 재산처분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관에 규정한 재산처분 방법은 결국 총유권자인 교인들이 결정한 것으로 합법이다.

여기서 재산처분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정관에 재산처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리한다.

재산처분과 그 귀속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제정과 변경을 할 수 있다. 정관에 이를 달리 규정하였을 때 이는 무효가 된다. 예컨대 "정관은 당회에서 변경한다"라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이러한 법리로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이나 변경을 할 때가 있다. 그때 교인들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으면 그대로 통과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독소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정관에 "당회 직무"에 "교회 재산처분"이라는 규정이 있

1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다. 이 규정은 교회 재산의 처분권을 당회에 위임하는 규정이다. 대수롭지 않게 승인해 준 정관 안에 당회의 재산 처분권은 교회 재산에 담임목사와 당회원이 장로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곧 법이 되어 버린다. 좋은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나쁜 의도로 목사와 장로가 합작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여 교회 부동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 재산(부동산)을 처분할 때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혹은 목적물인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당회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로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하되 처분 의결정족수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등이 아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 등의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 교인 수가 줄어들거나 의도적으로 줄어들게 하여 교회 재산을 특정인들이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재산처분에 대한 자금 처리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공익제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회 직무
재산처분 및 취득, 담보 제공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을 가진 교회는 교회 재산인 부동산 처분과 취득이 당회에 위임돼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관을 가진 교회는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재산처분과 취득을 결의했다고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최고 의결기관을 통하여 교회 재산처분과 취득을 공동의회로 소집하여 결정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의회에서 이를 당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나 정관에 당회 위임규정이 없을 때는 당회가 이를 결정할 때 위법이 된다. 정관을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오직 재산처분과 취득 권한을 당회에 위임해 줘 버리면 나중에 당회에서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고 취득해도 이를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저항을 할 수 없다.

처분은 당회에 위임하였을지라도 처분 재정에 대한 문제는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이는 제직회 결의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은 제직회는 공동의회가 위임해 준 사항만 처리하였으므로 재산처분은 오직 공동의회에서만 처리해야 한다. 일단 처분 금액을 재정부장(혹은 재정국장)을 통해 교회 재정에 입금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의회 인준 범위 내에서 처분한 금액을 처리해야 한다.

당회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 은퇴기금으로 곧바로 처리해도 위법이 되어 버린다. 교회 재정집행이 제직회뿐만 아니라 당회에도 위임되었을지라도 이러한 집행 역시 공동의회로부터 예산 편성해 준 범위 안에서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권이 당회에 위임된 정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처분한 모든 과정과 처분 금액에 공동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재산처분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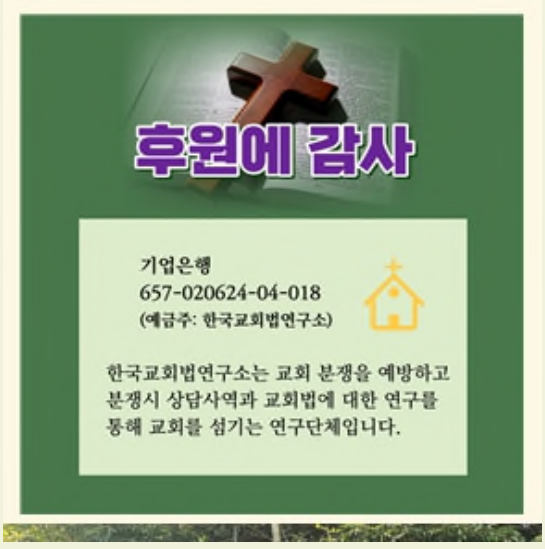

목사면직처분은 교회 담임목사직 해직

지교회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그의 신분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목사직 면직처분 효력 시점

목사가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면직 판결 효력 시점은 권징조례 권징조례 제121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121조는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권징조례 제121조 2항)이다.

재판국이 노회로부터 위탁받아 심리하여 판결한 내용은 노회에 보고한다(권징조례 제118).

여기서 권징조례 제121조의 '공포'란 재판국 판결을 공포라 하는가? 아니면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가 채용하여 확정할 때 노회장이 공포할 때를 의미하는가?

필자는 여기서 판결의 법적 효력 시점을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장이 판결을 공포할 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참조, 소재열 지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 "제121조 해설 및 노회 재판국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브엘북스, 2019), 823-856.)

실무적으로 노회 재판국이 판결하였으면,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가 이를 받아 공포한 후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추후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면직 받은 목사가 총회에 상소할 경우

면직 받은 목사가 자신에 대한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하였을 때, 원심인 노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의 효력에 관한 목사면직

처분은 교회 담임목사직 해직 문제가 등장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도가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이러한 법률적인 원칙에 의하면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아 최종심인 총회에 상소하여 유죄로 확정판결할 때까지 노회 면직은 무죄로 추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 교단 권징조례 내용과는 다르다. 즉 본 교단 권징조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권징조례 제100조).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총회에 상소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노회 면직 판결은 확정된다. 총회에 상소와 상관없이 노회 판결은 곧바로 확정된다.

목사의 면직은 주로 권징조례 제42조에 의해 "이단, 불법 교회 분립"은 면직 대상이며, 면직될 경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면직 판결 효력을 공포로부터 곧바로 확정하는 원리이다.

면직 받은 목사의 지교회 시무권

지교회 담임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고 출교 처분을 겸하여 처분받지 아니할 경우, 노회는 면직 받은 목사의 지교회 시무권을 '해직'한다(권징조례 제45조). 이는 위임목사이면 위임목사 해약이 된다(정치 제17장 제4조).

이때 노회는 해당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10항). 노회에서 면직 받은 목사가 지교회 치리권은 박탈된다.

면직이 아닌 정직의 경우, 본인이 총회에 상소할지라도 노회 정직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권징조례 제45조, 제100조). 그러나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고 총회에 상소할 때는 담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한다(권징조례 제4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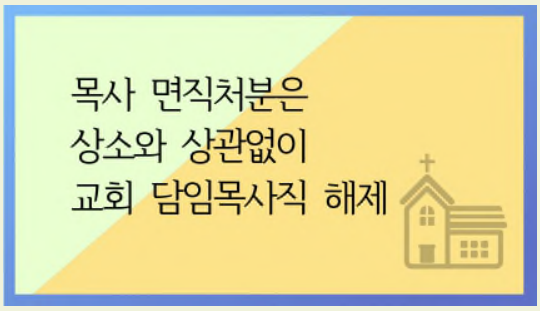

지교회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그의 신분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목사직 면직처분 효력 시점

목사가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면직 판결 효력 시점은 권징조례 권징조례 제121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121조는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권징조례 제121조 2항)이다.

재판국이 노회로부터 위탁받아 심리하여 판결한 내용은 노회에 보고한다(권징조례 제118).

여기서 권징조례 제121조의 '공포'란 재판국 판결을 공포라 하는가? 아니면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가 채용하여 확정할 때 노회장이 공포할 때를 의미하는가?

필자는 여기서 판결의 법적 효력 시점을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장이 판결을 공포할 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참조, 소재열 지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 "제121조 해설 및 노회 재판국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브

엘북스, 2019), 823-856.) 실무적으로 노회 재판국이 판결하였으면,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가 이를 받아 공포한 후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추후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면직 받은 목사가 총회에 상소할 경우

면직 받은 목사가 자신에 대한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하였을 때, 원심인 노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등장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도가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이러한 법률적인 원칙에 의하면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아 최종심인 총회에 상소하여 유죄로 확정판결할 때까지 노회 면직은 무죄로 추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 교단 권징조례 내용과는 다르다. 즉 본 교단 권징조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권징조례 제100조).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총회에 상소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노회 면직 판결은 확정된다. 총회에 상소와 상관없이 노회 판결은 곧바로 확정된다.

목사의 면직은 주로 권징조례 제42조에 의해 "이단, 불법 교회 분립"은 면직 대상이며, 면직될 경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면직 판결 효력을 공포로부터 곧바로 확정하는 원리이다. 일단 면직처분을 받을 경우, 설교를 할 수 없다.

면직 받은 목사의 지교회 시무권

지교회 담임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고 출교 처분을 겸하여 처분받지 아니할 경우, 노회는 면직 받은 목사의 지교회 시무권을 '해직'한다(권징조례 제45조). 이는 위임목사이면 위임목사 해약이 된다(정치 제17장 제4조).

이때 노회는 해당 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10항). 노회에서 면직 받은 목사가 지교회 치리권은 박탈된다.

면직이 아닌 정직의 경우, 본인이 총회에 상소할지라도 노회 정직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권징조례 제45조, 제100조). 그러나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고 총회에 상소할 때는 담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한다(권징조례 제45조).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를 '무임집사'라 한다. 타 교회의 시무집사(안수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해 왔을 때 시무집사직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무임집사일 뿐이다. 무임집사는 시무집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 교회에 이명온 무임집사가 정년은퇴 전인 만 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이명온 후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시무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여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정치 제6장 제4조 4항).

당회가 무임집사에게 서리 집사직을 맡길 수 있다(정치 제6장 제4조 4항). 당회가 무임집사를 "서리집사직을 부여한다"라는 결의를 한 후 당회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당회 기록이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리집사는 자동으로 제직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당회가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의 권리를 줄 경우,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정치 제21장 제2조 1항). 따라서 무임집사는 자동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법리에 이른다.

무임집사가 제직회 회원이 아니므로 제직회 직무를 부여할 수 없다. 무임집사가 제직회 회원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순서에 따라 첫째, 당회가 서리집사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은 당회의 결의사항이며, 반드시 당회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무임집사가 교인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제직회 직무를 맡기면 안 된다. 당회 결의 없이 임의로 담임목사가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주면 안 된다.

당회가 없는 교회에 시무집사(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다고 총회가 결의하였으므로 미조직교회의 무임집사에 대해 담임목사의 개인 결정으로 서리집사직을 맡겨 제직회 회원이 되게 할 수 있다.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에게 노회가 "당회장 권을 부여"(정치 제15장 제12조 1항)하였을 때에 담임목사 개인 자격으로 무임집사에게 서리집사의 직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만약에 그 직무를 철회할 경우, 면직이나 정직하면 안 된다. 이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면직이나 정직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임명한 서리집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명철회를 하면 된다. 조직교회에서는 그 철회는 담임목사 개인의 권한이 아닌 당회 권한이다.

제직회에서 권한 없는 자에게 재정과 같은 중요 직무를 맡길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당회는 무임집사에게 서리집사직을 맡겼는지,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주기로 한다는 당회록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치유하는 당회 결의를 하여 당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원로 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는 부목사 신분, '후임 목사 신분 아니다

제40회 총회인 1955년 4월 22일에 소집된 총회에서 헌법 정치 편이 개정되었다. 이 총회는 4월 총회의 마지막이었다. 이듬해인 제41회 총회부터 9월 총회로 회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4회는 총회는 '동사목사'(同事牧師) 제도가 없어지고 '부목사' 제도를 신설했다. 한국교회 초기부터 시행되어온 동사목사를 폐지하고 대신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기 1년의 부목사(副牧師)를 신설했다.

그러나 제88회 총회(2003)에서 "부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은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로 해당 교회 부목사를 청빙하고 싶어도 제88회 결의에 막혀 청빙할 수 없다. 그러나 정년은퇴 원로 목사가 부목사 중에서 동역 목사로 하여 정년 은퇴시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후임 목사를 청빙하고 이를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를 승인하므로 후임 목사가 결정된다.

정년은퇴로 원로 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부목사 중에서 동역 목회를 한 후 정년 은퇴시 공동의회 청빙 투표로 후임 목사 된 절차를 승인해 달라는 청원이었다. 이에 대해 제104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제104회 총회(2019년)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 후임 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 헌의안과 총회결의는 '동사목사'가 아니었음에도 총회 본부와 헌의부가 이를 '동사목사'라고 헌의 내용에 없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헌법에도 없는 '동사목사'라고 붙였다.

필자가 제107회 총회에 노회를 통해 '동사목사'가 아닌 '동역하는 목사'(일명 '동역 목사')로 변경해 달라고 결의했다. 그러자 제107회 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동사목사 명칭 변경 관련, 제104회 결의인 동사목사를 동역목사로 변경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해야 하는데

‘현행대로’라고 결의해 버렸다. 현행대로란 ‘동사목사’라고 한 것이다. 1955년 제44회 총회에서 동사목사를 폐지하고 부목사를 신설했는데 이제 정년 추대 전 동역하는 부목사를 동사목사로 하였으니 총회결의가 우습게 돼 버렸다.

동역하는 목사는 부목사 신분일 뿐이다. 이런 종류의 부목사를 동사목사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제40회 총회에서 동일명칭인 동사목사를 폐지했다. 그런데 다시 동일명칭을 부활시켰다. ‘동역하는 부목사’(약칭 동역 목사)가 거부되었다.

이런 결의와 시행에 대해 오해하여 주장을 편 자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에서 동역하는 부목사 신분과 원로 목사 추대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청빙이 결정되면 후임 목사 신분이 된다.

후임 목사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결의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할 때 법적으로 후임 목사 신분이 된다. 그러나 “원로 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한 목사”는 부목사 신분이다. 이 기간의 부목사는 후임 목사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 공동의회에서 후임 목사로 신분이 확정되지도 않고 현재 부목사 신분으로 동역하는 목사를 “후임 목사로 결정하였다”라고 잘못된 법리를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법리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상식적인 접근의 결과이다. 이러한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부목사를 “원로 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 목회자로 결정된 부목사는 후임 목사가 되었다고 자만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 담임목사 정년은퇴시 동역 부목사를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하여도 제88회 총회 결의(동일교회 부목사는 담임목사, 후임 목사 될 수 없다)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특별결의이다.

동역하는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정년 은퇴시 본 교단 헌법 규정에 본 교단 강도권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담임목사 청빙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교단 헌법을 위반한 위법이라 하지 않는다.

심지어 정치 제15장 제13조 요건을 충족한 자를 담임목사(후임 목사)로 결정한 것 역시 공동의회 결의로 인한 교인들의 총의로 담임목사를 청빙한 것이지, 현 담임목사가 후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하여 “동역하는 부목사” 신분의 목사를 현 담임목사가 후임 목사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임시 당회장 불법 파송 지교회 대표권 없다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정치 제10장 제6조 10항).

노회와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된다. 헌법에 반한 노회와 총회 결의는 효력이 부인된다. 문언적 규정에 반한 총회 결의는 스스로 장로회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회가 스스로 교단 헌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교회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담임목사인 교회 대표자는 엄격한 관리와 임면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임면 역시 무효 사유가 된다.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 소속 전체 교인들의 총회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 없이도 교단 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인 노회가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을 경우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교회를 대표"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59 판결).

그러나 노회(교단)가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 적법하게 파송하지 아니하면 임시대표자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이 없는 자에 의해 공동의회와 당회를 소집하였을 때는 그 결의 자체가 부인된다.

법원은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피고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은 법적인 당회장(담임목사)이 없는 경우(궐위)에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 문제는 법적인 당회장(담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면(免)할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한다.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는 교단 헌법(장로회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 규정 내용이 바로 정치 제10장 제6조 10항인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노회가 시찰 위원(시찰회가 아닌 시찰 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임시 당회장을 택하여 파송할 때만 임시 당회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노회가 시찰 위원이나 특별위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는 노회 규칙이 있거나 노회가 결의해야 한다. 이러한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 임원 정치부나 총회 특별위원회가 지교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 이는 원천 무효가 된다.

순천노회의 분쟁 사건에서 총회 임원회가 순천노회에 대항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종전 순천노회 동일성을 유지한 노회로 인정한 행위를 위법이라며 노회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례가 있다. 이는 교단 헌법에 반한 결정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라고 하더라고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노회 노회장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에 주의해야 한다.

총회 위원회나, 총회 특별위원회, 노회 임원회, 특별위원회가 특정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송한 행위는 위법 행위로 그로 인해 결의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 상식적인 접근은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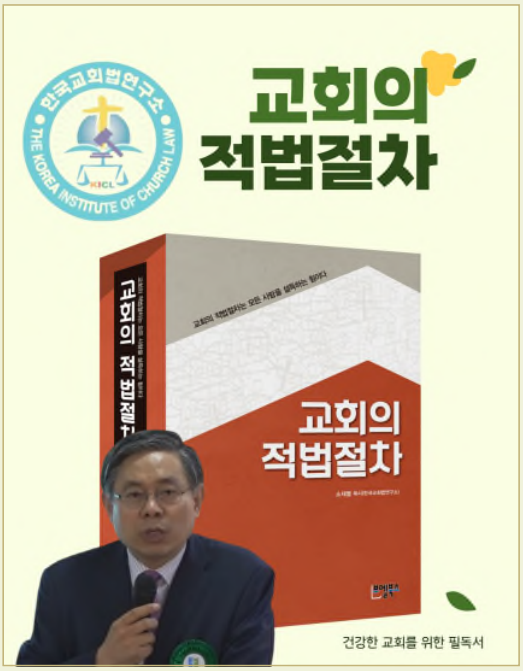

소재열 목사 지음, 신국판 양장, 1,300쪽 정가, 60,000원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한국교회법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교회분쟁시 관련 교회법 연구 용역
- 교회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 제정 및 정비
-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한 문제
- 공동의회 및 당회의 적법성 문제
- 노회 운영에 대한 적법절차 문제
- 교회 및 각종 교회 세미나 강사
- 연구실 직접 방문한 상담
- 교단 헌법 해석과 적용 문제 상담
- 교회 내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 본 연구소 고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상담

이메일 : law134@naver.com

제직회는 한국장로교회에서만 신설하는 제도였다. 『정치문답조례』에서는 집사의 모임을 '집사회'라고 하였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에 집사회를 1934년 헌법에는 제직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를 제도화하였다. 이 제직회는 당회원을 포함하였으며, 목사가 회장이 된다고 하였다.

초기 헌법인 1922년 헌법에는 제6장 집사에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1934년 헌법 개정에서 제6장 '집사회'를 제7장에 '제직회'로 신설하였다. 집사회가 제직회로 하면서 동시 제7장 제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10장 11조에 공동의회가 있었다. 1922년 헌법의 공동처리회를 공동의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34년 12조에 연합당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7장 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도 단위, 또한 지방 단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 지역에서 총회가 개최될 때 환영 행사는 그 지역의 제직회 또는 연합제직회에서 맡았다. 역사적으로 평양도제직회, 평양연합제직회, 신의주도제기회, 경성연합제직회 등이 있었다. 평양도제직회는 맹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평양연합당회(도당회)는 평양신학교 설립에 주역이 되기도 했다.

1934년 헌법 정치 제7장 제직회 제3조에 '재정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쟁점이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재산이 증가하였으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문제로 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12년에 일본의 민법(민사법)에 따라

각종 법령인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조선민사령은 부동산 소유권을 비롯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등은 등기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1912년 3월 30일에는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골자로 한 것으로 교회가 이러한 법리에 의해 재산을 등기에 의해 소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유로 교회와 총회는 이러한 법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와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기는 1918년 7월 10일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완료한 후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조선인의 토지 수탈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법률에 의지하여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는 각 교회 소유의 토지, 가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목사와 장로로 하고, 대표사원은 마포삼열, 곽안련, 주공삼, 위대모, 김필수, 홍승한, 김규식 함태영 등 9명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가 파한 후 1912년 11월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독부에 제출하였지만 1914년에 이르러 거절되었다.

총회(제3회, 1914년)는 사단법인이 불가하므로 재단법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총회는 '재단부'를 두어 이를 진행해 나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서는 전남노회가 처음으로 1930년 9월 1일에 재단법인이 설립인가가 나왔다. 1912년에 시작된 법인 설립은 18년만인 1930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서 평양노회(1931. 6. 6), 평서노회(1932. 11. 29), 순천노회(1932. 12. 12. 17.), 경안노회(1933. 8. 25), 의산노회(1933. 8. 26), 평북노회(1933. 11. 10), 황해노회(1932. 11. 10), 경북노회(1934. 1. 15), 함남, 함중, 함북연합노회(1934. 4), 용천노회(1940. 8).

이렇게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교회 재산을 노회 재단 명의로 등기하도록 했으며, 1934년 헌법에서는 제직회의 재정처리에서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하도록 교단헌법까지 개정하였다. 이는 이미 재단법인 설립을 지교회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이었으므로 교단 헌법을 법인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의 효력은 1990년에 이르러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물권인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판 헌법은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라고 했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해 준 재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 집행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제직회 권한이다.

교단 헌법에 따라 제직회가 예선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예산편성안 작성),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직회가 집행한다(재정 집행권). 그리고 재정집행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집행 결과 보고권).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는 제직회가 이러한 권한

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당회가 예산편성, 재정 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교단헌법에 반한 재정권 행사라 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 따른 재정집행 권한을 가진 제직회에서 집행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에 재정 예산 편성하여 공동의회 보고를 당회 직무로 한다거나 재정집행 권한 역시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공동의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행위는 정관에 재정의 예산편성과 재정결산 승인권을 갖는 교인들의 권한이다. 재산의 총유권을 가진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단헌법과 달리 제직회 권한에서 당회 권한으로 정관을 정비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교단헌법보다 교회 정관이 인정을 받는다. 교단헌법대로 제직회 직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직회 직무를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당회가 이 직무를 수행하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교회 유급 직원, 정년 규정 해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정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

규정상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년 규정이 없다. 하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정년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서 71세 하루 전날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내 유급직 원에 대한 정년은 정관에 만 60세 이상을 특정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교회에 근로자에 해당한 유급 행정 및 관리직원에 대해 정확히 정년을 규정해야 한다. 6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을 때 60세로 적용한다. 그러나 규정상 60세 이상의 어느 때를 정년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그 규정이 정년에 해당된다.

정년이 60세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예컨대 1962년 1월 1일 생일 경우 60세 도달한 날은 2022년 1월 1일이 된다. 또는 정년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날"로 되어 있으면, 2023년 1월 1일이 된다. 만 60세에 도달한 날은 2022년 1월 1일이고, 만 61세에 도달한 날은 2023년 1월 1일이다.

총신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의 정년에 대해 "임원의 임기 중 만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법인 정관 제19조). 이는 본 교단 총회의 만 70세 정년제의 해석 결과이다.(*)

본문 요 10장은 하나님의 아들은 선한 목자이신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10장은 1-6절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여주고, 7-18절은 선한 목자, 19-21절은 유대인의 반발, 22-30절은 예수님의 양 떼와 거짓 양 떼, 31-42절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6절입니다.

1. 양의 목자(1-2)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하십니다(1-2).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여기 쓰인 진실로 진실로(아멘 아멘)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말에 참, 진실, 확실함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한 내용은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고 강도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입니다. 여기 절도(클레프테스)는 도적이나 도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강도(레스테스)는 강도, 산적, 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약탈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가짜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목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암시를 통해서 이를 보여주십니다.

2. 목자와 양(3-6)

계속해서 3-6절까지를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요 10:3-6).

첫째,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3).

여기 문지기는 문을 열고 닫는 자입니다. 사실 당시 규모가 작은 목장에서는 밤 동안 양의 문을 목자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목장에서는 밤 동안 목장을 지키는 문지기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는 누구를 비유하는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모세, 세례 요한, 선지자들 등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여기 문지기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위해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지기는 양을 돌보고 지킵니다. 그리고 양은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은 서로를 알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둘째,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3).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유는 목자는 양과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의 특성을 잘 압니다. 따라서 목자는 그 양 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양 중에는 귀가 큰 것, 귀가 작은 것, 목소리가 큰 것, 목소리가 작은 것, 앞다리가 긴 것, 앞다리가 짧은 것, 꼬리가 두터운 것, 꼬리가 얇은 것 등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살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신약학자인 C. T. Willson은 양의 신체적 특징이나 독특한 습관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셋째,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옵니다(4).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서 갑니다. 목자는 양들이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 앞에 가면서 길을 인도합니다. 좋은 풀이 가득한 곳으로 양 떼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목자입니다.

시 23편에 보면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1-5).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함께 하시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합니다(5).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가 부르면 가지 않습니다.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따라갑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알지 못하니라(우크 에그노산)은 부정과거입니다. 즉 그들은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목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섬기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김순정 목사(말씀사역원 본부장)

담임목사 방 성 일

하남교회

HANAM PRESBYTERIAN CHURCH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HANAM CHURCH"

예배의 감격, 말씀과 기도의 부흥, 교제와 사랑, 나눔과 섬김으로
하남교회가 하남시 역사에 새 길을 내고 있습니다.

http://www.hanam.or.kr/

12936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45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827번지) 031-792-5004 FAX. 031-794-7566

http://www.yangkogno1.org/

양곡제일교회

경기도 김포시 양곡2로80번길 30
TEL : 031-981-5767 FAX : 031-984-5268

담임목사 임 재 호

1.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Worship
2.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섬김" 공동체 Sharing
3.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훈련" 공동체 Training
4.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 공동체 Evangelism
5.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가정" 공동체 Family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한 기 승

선교하는 교회 · 교육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도하는 성도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36 광신대학교 내 http://www.gjjoongang.org/
☎ 사무실 : 062)523~9419 Fax) 062-522-4834

사랑하며 섬기는 새에덴교회

다시 본질로!
Back to Essence Again!

다시 생명으로!
Back to Life Again!

다시 사명으로!
Back to Mission Again!

담임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도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대표적인 영적 역설적 슈퍼 처치입니다."

소강석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마틴루터킹 국제 평화상을 수상하고 한국 목회자 최초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록에 등재되었으며,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한 목회자요. 현대적 지성과 예술적 감성, 광야의 영성을 겸비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복음의 사회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교회 생태계와 건강한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에덴교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TEL 031-896-1000 **www.saeeden.kr**